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적 수치심’ 을 ‘성적 불쾌감’ 으로 변경 〉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76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76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2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221957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6. 6. 29.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7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안 제23조·제50조)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u>수치심</u> 을 일으키는 행위 5. ~ 7. (생략) ② ~ ⑨ (생략)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불쾌감-----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 ~ ⑥ (생략)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u>수치심</u> 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생략) ⑧ · ⑨ (생략)	제50조(벌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현행과 같음) 2. -----불쾌감----- ----- 3. (현행과 같음) ⑧ · ⑨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7차 회의에서 강간 등 범죄에 적용되는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가중적 특별양형인자에 포함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정조 관념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였음.¹⁾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수치심’²⁾이란 사전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감정을 뜻하는 것인데, 현행법이 피해자에게 떳떳하지 못한 감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임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오해를 바로 잡으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범죄구성요건의 표현 변경은 범죄의 성격과 그 처벌 대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법률에서 ‘수치심’은 해당 표현의 사전적인 의미와는 달리 고유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성에 관한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1)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결과, 운영지원단 (2022. 7. 4.), 8. 한편, 성범죄 양형기준의 표현 수정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13인 중 8인은 ‘불쾌감’, ‘모욕감’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양형위원회, 제116차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보고, 수석전문위원 (2022. 5. 2.), 26-27.

2)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C%88%A8%EC%B9%A8>)

에서 ‘수치심’은 ‘부끄러움’과 유사하나,³⁾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는 점에서 보다 제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⁴⁾⁵⁾

또한, 법률상 ‘수치심’은 대상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사전적인 의미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사전적 의미에서 ‘불쾌감’은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으로, ‘떴떴하지 못함’ 내지 ‘부끄러움’을 뜻하는 ‘수치심’과는 의미가 상이하므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의 범주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의 범주보다 넓다고 볼 소지가 있음.

실제로, 현행 법체계에서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대개 성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불쾌감은 수치심보다 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음.⁶⁾

3)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4호 다목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舊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대하여 ‘수치심’을 ‘부끄러움’으로 변경하는 것이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도중진 등, “청소년 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182.

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바153 결정 등.

5)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략)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6)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처럼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순수한 사전적 의미와는 구분되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표현의 의미 범위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용어 변경 추세에 맞추어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성적 불쾌감으로의 용어 변경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580

「궤도운송법」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5항제1호·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